

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제정 2007. 12. 31 조례 제1571호
개정 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2008. 11. 11 조례 제1622호
일부개정 2013. 5. 3 조례 제1920호
일부개정 2013. 8. 1 조례 제1936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4. 8. 22 조례 제2009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5. 11. 5 조례 제2131호(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
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5. 4. 7 조례 제3238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4. 7]

제2조(정의) “저소득 세대”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

1. 차상위 자활대상자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계층 확인 등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세대

[전문개정 2025. 4. 7]

제3조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4. 7]

제4조(공고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 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11, 2025. 4.

7>

②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, 지원방법,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5조(지원시기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,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1. 11]

제6조(대상자 선정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매월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 확인을 의뢰한다. <개정 2008. 11. 11, 2020. 3. 25, 2025. 4. 7>

②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08. 11. 11, 2025. 4. 7>

③ 삭제 <2008. 11. 11>

제7조(대상자 관리)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22>

제8조(조사)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초로 하여 지원 대상자,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별도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4. 7>

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예산 확보)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1. 11, 2025. 4. 7>

제10조(환수 등) ① 다른 법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,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1. 11 조례 제162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5. 3 조례 제19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. 7.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3. 8. 1 조례 제1936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09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1. 5 조례 제2131호,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
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
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4. 7 조례 제323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[별표] 삭제 <2014. 8. 22>